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08
----------	------

발의연월일 : 2024. 11.

발의의원 : 신달호 의원,

박주용 의원, 최재규 의원

1. 제안이유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대형화재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을 갖춘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등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2. 화재 대응 매뉴얼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2. 전기자동차 차량용 질식소화포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

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2.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아 설치한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21.7.27. 일제개정 2022.1.28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2024.7.2. 타법개정, 2024.7.10 시행)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

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